

압류·수색 등 통지서				
문서번호			발급일자	
체납자	성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제3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하고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8조). 2.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근거: 「국세징수법」 제37조). 3. 세무공무원은 압류, 수색 및 질문·검사시 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39조). ※ 세무공무원이 집행하는 수색은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 유효기간				
집행 장소				
집행 물건				
집행 이유				
체납내용				
집행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세무서장 직인				